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인권통계 법적 근거 마련〉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34호)

2025.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미화 · 박정현 · 조계원 · 윤종균 · 허성무 · 박지원
박해철 · 이용선 · 이기현 · 김 윤 · 김문수 · 위성곤
김영환 · 윤건영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5. 2. 13.

3. 회 부 일 : 2025. 2. 14.

※ 의안번호 : 813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통계는 인권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나아가 국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이 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년 이상 국가인권통계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400개 이상의 인권통계를 생산했음. 현재까지 작성·공표된 인권통계는 현행법 제19조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조문을 근거로 추진되었으나, 국가인권통계를 명확히 규율하는 근거가 미흡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를 원활히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및 제19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신설하는 동시에, ② 국가인권 통계 작성·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19조의3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국가인권통계”란 국내 인권 상황과 그 변화를 분석·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정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제19조의3(국가인권통계) ① 위원회는 국내 인권상황과 그 변화를 파악하고 인권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인권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 통계 작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

현 행	개 정 안
	를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통계 구축 및 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통계 작성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으나,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과 국내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지표 개발을 위하여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4호¹⁾를 근거로 2019년부터 매년 국가인권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현재 수행 중인 국가인권통계 작성 업무 수행 주체, 작성 방식 및 현황, 공표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계약 방식으로 선정²⁾한 후, 선정된 연구용역 수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2) 국가인권통계 연구용역 현황(2019년~2024년)

(단위: 천원)

구분	실태조사명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2019년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19)	2019.2.28.~12.13.	(사)한국삶의질학회	99,785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2019.2.25.~11.29.	통계청(통계대행과)	500,000
2020년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20)	2020.3.6.~12.14.	(사)한국삶의질학회	99,978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2020.2.24.~11.30.	통계청(통계대행과)	580,000

행기관이 ① 정부기관 등에서 생산한 기존 통계 및 행정자료를 가공하여 얻은 통계 등과 ② ‘인권의식실태조사’³⁾를 통하여 신규로 생성 또는 갱신된 통계 등을 검증·분석하여 인권영역·권리유형·인권주제별로 매년 380개~470개 정도의 국가인권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작성된 국가인권통계를 매년 간행물(「한국의 인권통계」) 형태로 발간하고 해당 간행물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하고 있음.

[표-2] 국가인권통계 작성 현황(2019년~2024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81개	460개	474개	467개	468개	472개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한편, 특정 통계의 조사·작성 등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결

구분	실태조사명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2021년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21)	2021.3.23.~11.30.	(사)한국삶의질학회	99,079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2021.4.26.~11.30.	(주)한국리서치	540,000
2022년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22)	2022.3.21.~11.30.	(사)한국삶의질학회	99,240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2022.3.29.~11.30.	(주)한국리서치	485,000
2023년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23)	2023.4.26.~11.30.	(사)한국삶의질학회	97,921
	2023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2023.4.6.~11.30.	(주)한국리서치	490,000
2024년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연구용역(한국의 인권통계 2024)	2024.4.15.~11.30.	(사)한국삶의질학회	99,500
	2024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2024.4.16.~11.30.	(주)한국리서치	490,000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3)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에 해당함.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핵예방법」(결핵통계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의 통계), 「고등교육법」(교육통계조사), 「고용정책 기본법」(고용 관련 통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등 여러 법률에서 특정 정책 목표의 달성이나 제도의 수립·평가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의 수집·조사 또는 작성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국가인권통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게 되면 국가인권통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작성이 가능하게 되어 국가인권통계의 정확성·일관성·신뢰성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국가인권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법률에서 특정 목적의 통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⁴⁾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통계 작성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고 연구용역 방식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국가인권통계 작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법정화되게 되면 별도의 업무 위탁 근거가 없는 이상⁵⁾ 민간기관인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해당 업무를

4)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인권통계 작성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의견을 제시하였음.

5)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은 없음.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6조와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규정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 참고로, 개별법에 위임·위탁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국가인권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권을 민간기관인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행사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통계 작성 업무 수행 방식을 연구용역 방식에서 직접 수행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국가인권통계 작성 업무의 위탁 근거⁶⁾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법제적 측면에서, ① 개정안은 제2조제9호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인권통계’를 ‘국내 인권 상황과 그 변화를 분석·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정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⁷⁾

해당 정의의 내용은 개정안 제19조의3제1항에 규정된 국가인권통계의 작성 목적인 ‘국내 인권상황과 그 변화를 파악하고 인권정책 추진에 활용’과 의미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국가인권통계라는 용어도 한 개 조문(제19조의3)에서밖에 나오지 아니하며 해당 정의가 없더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정의는 삭제하는 방안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위임·위탁의 법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으므로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4, p.489).

6) 업무가 위탁되면 수탁자의 명의로 그 책임하에 처리되고 그 처리의 법적 효과도 우선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나, 위탁자가 비용부담과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됨(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4, p.488).

7) 법령 가운데 어떤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그 용어가 지니는 의미의 다양성과 그 용어가 법령상 차지하는 비중과 법적 효력상의 중요성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4, p.58).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② 개정안 제19조의3제1항은 국가인권통계 작성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합의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대외적으로 표시·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주체는 위원장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로 규정⁸⁾되어 있으므로,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권한의 행사 주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⁹⁾

문 의 처

02)6788-5017

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⑦ 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또는 그 자료, 물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0조의8(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6조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국가기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다.

9) 법률에서 권한 행사 주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규정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위임·전결을 통하여 위원장 또는 보조기관에 결재권을 위임할 수 있음.

참고

인권영역 · 권리유형 · 인권주제별 통계 현황

□ 2019년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 수
거버넌스 (37)	평등권 (7) 시민·정치적 권리 (30)	정치참여의 평등	7
		집회의 자유	2
		결사의 자유	1
		사상의 자유	1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1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19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3
		구제 및 면책 권리	3
사법정의 (67)	시민·정치적 권리 (67)	안전할 권리	51
		사생활 보호 권리	8
		공정한 재판 권리	4
		사법적 구제 권리	3
		임의 체포와 구금	1
물질적 생활수준 (2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4)	사회안전망 권리	18
		인권과 빈곤	6
주거와 교통 (35)	시민·정치적 권리 (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5)	거주 및 이동의 자유	10
		적절한 주거 권리	25
가족 (4)	시민·정치적 권리 (4)	가정폭력	4
노동 (68)	평등권 (2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9)	고용에서의 평등	17
		노동조건의 평등	12
		일할 권리	7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30
		노사관계 권리	2
건강 (54)	평등권 (7) 시민·정치적 권리 (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8)	보건서비스의 평등	7
		생명권	9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13
		적절한 식생활 권리	6
		의료 접근권	15
		모성 및 아동 보호	4
교육 (32)	평등권 (5) 시민·정치적 권리 (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3)	교육기회의 평등	5
		교육선택의 자유	4
		교육받을 권리	23
문화미디어·정보 (39)	평등권 (23) 시민·정치적 권리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6)	다양성 존중	23
		표현의 자유	—
		문화적 생활 권리	13
		정보 접근권	3
환경 (1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3)	쾌적한 환경 권리	11
		식수 및 위생 권리	2
가치와 의식 (8)		인권실태 평가	5
		인권 인식과 교육	3
합계			381

□ 2020년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 수
거버넌스 (43)	평등권 (7) 시민·정치적 권리 (36)	정치참여의 평등	7
		집회의 자유	4
		결사의 자유	1
		사상의 자유	2
		양심의 자유	1
		종교의 자유	1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22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2
		구제 및 면책 권리	3
사법정의 (72)	시민·정치적 권리 (72)	안전할 권리	43
		사생활 보호 권리	12
		공정한 재판 권리	5
		사법적 구제 권리	7
		임의 체포와 구금	5
물질적 생활수준 (2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7)	사회안전망 권리	18
		인권과 빈곤	9
주거와 교통 (37)	시민·정치적 권리 (12)	거주 및 이동의 자유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5)	적절한 주거 권리	25
가족 (8)	시민·정치적 권리 (8)	가정폭력	8
노동 (77)	평등권 (3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5)	고용에서의 평등	20
		노동조건의 평등	12
		일할 권리	10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31
		노사관계 권리	4
건강 (64)	평등권 (7)	보건서비스의 평등	7
	시민·정치적 권리 (9)	생명권	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8)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15
		적절한 식생활 권리	8
		의료 접근권	18
		모성 및 아동 보호	7
교육 (36)	평등권 (5)	교육기회의 평등	5
	시민·정치적 권리 (8)	교육선택의 자유	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3)	교육받을 권리	23
문화미디어정보 (51)	평등권 (31)	다양성 존중	31
	시민·정치적 권리 (1)	표현의 자유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9)	문화적 생활 권리	17
		정보 접근권	2
환경 (1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9)	쾌적한 환경 권리	16
		식수 및 위생 권리	3
가치와 의식 (26)		인권실태 평가	10
		인권 인식과 교육	16
합계			460

□ 2021년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 수
거버넌스 (43)	평등권 (7) 시민·정치적 권리 (36)	정치참여의 평등	7
		집회의 자유	4
		결사의 자유	1
		사상의 자유	2
		양심의 자유	1
		종교의 자유	1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22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2
사법정의 (79)	시민·정치적 권리 (79)	구제 및 면책 권리	3
		안전할 권리	45
		사생활 보호 권리	11
		공정한 재판 권리	5
		사법적 구제 권리	7
물질적 생활수준 (2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7)	임의 체포와 구금	11
		사회안전망 권리	18
주거와 교통 (36)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5)	인권과 빈곤	9
		거주 및 이동의 자유	11
가족 (10)	시민·정치적 권리 (10)	적절한 주거 권리	25
		가정폭력	10
노동 (77)	평등권 (3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5)	고용에서의 평등	20
		노동조건의 평등	12
		일할 권리	11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30
		노사관계 권리	4
건강 (69)	평등권 (7) 시민·정치적 권리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50)	보건서비스의 평등	7
		생명권	12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18
		적절한 식생활 권리	7
		의료 접근권	18
		모성 및 아동 보호	7
교육 (36)	평등권 (5) 시민·정치적 권리 (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3)	교육기회의 평등	5
		교육선택의 자유	8
		교육받을 권리	23
문화미디어·정보 (51)	평등권 (31) 시민·정치적 권리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9)	다양성 존중	31
		표현의 자유	1
		문화적 생활 권리	17
		정보 접근권	2
환경 (2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0)	깨끗한 환경 권리	17
		식수 및 위생 권리	3
가치와 의식 (26)		인권실태 평가	9
		인권 인식과 교육	17
합계			474

□ 2022년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 수
시민권과 참여 (45)	평등권 (8)	정치참여의 평등	8
	시민·정치적 권리 (37)	집회의 자유	4
		결사의 자유	1
		사상의 자유	2
		양심의 자유	2
		종교의 자유	1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22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2
		구제 및 면책 권리	3
사법정의 (79)	시민·정치적 권리 (79)	안전할 권리	45
		사생활 보호 권리	11
		공정한 재판 권리	5
		사법적 구제 권리	7
		임의 체포와 구금	11
생존권과 빈곤 (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2)	사회안전망 권리	14
		인권과 빈곤	8
주거와 교통 (35)	시민·정치적 권리 (11)	거주 및 이동의 자유	1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4)	적절한 주거 권리	24
가족 (10)	시민·정치적 권리 (10)	가정폭력	10
노동 (76)	평등권 (32)	고용에서의 평등	20
		노동조건의 평등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4)	일할 권리	10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30
		노사관계 권리	4
건강과 보건 (70)	평등권 (6)	보건서비스의 평등	6
	시민·정치적 권리 (13)	생명권	1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51)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18
		적절한 식생활 권리	7
		의료 접근권	19
		모성 및 아동 보호	7
교육 (34)	평등권 (5)	교육기회의 평등	5
	시민·정치적 권리 (7)	교육선택의 자유	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2)	교육받을 권리	22
문화미디어정보 (50)	평등권 (31)	다양성 존중	31
	시민·정치적 권리 (1)	표현의 자유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8)	문화적 생활 권리	16
		정보 접근권	2
환경과 생태 (1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9)	쾌적한 환경 권리	16
		식수 및 위생 권리	3
가치와 의식 (27)		인권실태 평가	9
		인권 인식과 교육	18
합계			467

□ 2023년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 수
시민권과 참여 (45)	평등권 (8) 시민·정치적 권리 (37)	정치참여의 평등	8
		집회의 자유	4
		결사의 자유	1
		사상의 자유	2
		양심의 자유	1
		종교의 자유	2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22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2
사법정의 (77)	시민·정치적 권리 (77)	구제 및 면책 권리	3
		안전할 권리	45
		사생활 보호 권리	10
		공정한 재판 권리	5
		사법적 구제 권리	7
		임의 체포와 구금	10
생존권과 빈곤 (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2)	사회안전망 권리	14
		인권과 빈곤	8
주거와 교통 (34)	시민·정치적 권리 (11)	거주 및 이동의 자유	1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3)	적절한 주거 권리	23
가족 (10)	시민·정치적 권리 (10)	가정폭력	10
노동 (78)	평등권 (3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4)	고용에서의 평등	20
		노동조건의 평등	14
		일할 권리	10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30
		노사관계 권리	4
건강과 보건 (69)	평등권 (6)	보건서비스의 평등	6
	시민·정치적 권리 (13)	생명권	1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50)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17
		적절한 식생활 권리	7
		의료 접근권	19
		모성 및 아동 보호	7
교육 (34)	평등권 (5)	교육기회의 평등	5
	시민·정치적 권리 (7)	교육선택의 자유	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2)	교육받을 권리	22
문화미디어·정보 (54)	평등권 (35)	다양성 존중	35
	시민·정치적 권리 (1)	표현의 자유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8)	문화적 생활 권리	16
		정보 접근권	2
환경과 생태 (1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8)	쾌적한 환경 권리	15
		식수 및 위생 권리	3
가치와 의식 (27)		인권실태 평가	9
		인권 인식과 교육	18
합계			468

□ 2024년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 수
시민권과 참여 (44)	평등권 (7) 시민·정치적 권리 (37)		정치참여의 평등	7
			집회의 자유	4
			결사의 자유	1
			사상의 자유	2
			양심의 자유	1
			종교의 자유	2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22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2
			구제 및 면책 권리	3
사법정의 (78)	시민·정치적 권리 (78)	안전할 권리	44	
		사생활 보호 권리	12	
		공정한 재판 권리	5	
		사법적 구제 권리	7	
		임의 체포와 구금	10	
생존권과 빈곤 (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2)	사회안전망 권리	14	
		인권과 빈곤	8	
주거와 교통 (34)	시민·정치적 권리 (11)	거주 및 이동의 자유	1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3)	적절한 주거 권리	23	
가족 (11)	시민·정치적 권리 (11)	가정폭력	11	
노동 (78)	평등권 (3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4)	고용에서의 평등	20	
		노동조건의 평등	14	
		일할 권리	10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30	
		노사관계 권리	4	
건강과 보건 (70)	평등권 (6)	보건서비스의 평등	6	
	시민·정치적 권리 (15)	생명권	1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9)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17	
		적절한 식생활 권리	6	
		의료 접근권	19	
		모성 및 아동 보호	7	
교육 (35)	평등권 (5)	교육기회의 평등	5	
	시민·정치적 권리 (8)	교육선택의 자유	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2)	교육받을 권리	22	
문화미디어정보 (54)	평등권 (35)	다양성 존중	35	
	시민·정치적 권리 (1)	표현의 자유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8)	문화적 생활 권리	16	
		정보 접근권	2	
환경과 생태 (1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8)	쾌적한 환경 권리	15	
		식수 및 위생 권리	3	
가치와 의식 (28)		인권실태 평가	10	
		인권 인식과 교육	18	
합계			472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